

청약 철회 요청서

· 본 신청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.
· 고객은 서면, 유선,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, 그 발송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
■ 고객정보

계좌명		계좌번호		생년월일	
-----	--	------	--	------	--

■ 청약 철회 대상

- ▶ 고객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하여, 아래 1) 또는 2)에 해당되는 날로부터
(대출성 상품) 14일 이내(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) 청약철회 의사 표시 가능
(투자성 상품) 7일 이내(고객과 회사간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) 청약철회 의사 표시 가능

접수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창구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선 <input type="checkbox"/> 우편 <input type="checkbox"/> 팩스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우편
청약철회 대상상품	<input type="checkbox"/> 투자성상품 (상품명 기입)
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출성 상품
1) 계약서류 제공받은 날	년 월 일
2) 계약체결일	년 월 일

■ 유의사항

▶ 대출성 상품

- 대출 약정 시 징구한 인지세와 대출이자 등 청약 철회 시에도 환급되지 않습니다.
- 반대매매 등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관련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-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하고,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. (다만, 서면 등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함)

▶ 투자성 상품

- 청약철회 적용대상: 비금전신탁계약 /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/ 고난도 펀드* / 고난도 투자일임계약
* 집합투자업자가 기간을 정하여 모집하고 기간 종료 후 자산운용을 실시하는 상품
-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- 청약의 철회는 고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서면 등을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.
(다만, 서면 등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함)

▶ 직원 기재란

접수(통화)직원 성명	통화시간	고객연락처	비고
-------------	------	-------	----

신청인 성명 (인 또는 서명)